

문서번호	시설안전팀-6859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8.11.15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팀장	건설안전본부장	사장
			11/15
고정일	정우철	김승호	김경호
협 조	팀장		임영규
감 사	감사실	감사필	

서울청과(주) 임시사무실(컨테이너) 이전설치 승인(안)

2018. 11.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시설안전팀

서울청과(주) 임시사무실(컨테이너) 이전설치 승인(안)

목적

- 노후 시설 정비를 통한 화재사고 예방
- 근무인원 증가 및 경매관련 전산장비 설치를 위한 현장사무공간 확보

1. 관련근거

- 시설안전팀-6394호(2018.10.29.) “2018년도 제1차 가설건축물심의회 결과 보고”
- 유통물류팀-1238호(2018.09.14.) “서울청과(주) 채소임시경매장내 가설건축물 설치공사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서울청과(주) 서청-2018-155호(2018.09.10.) “채소임시경매장내 가설건축물 설치공사 승인 요청의 건”

2. 가설건축물 이전설치 승인(안)

가. 대지현황

- 대지소유자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대지위치(지목)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 (밭)

나. 설치자(건축주) : 서울청과(주)

다. 설치규모 및 구조

바닥면적	건축면적 (대지사용면적)	구조	비고
187㎡	107㎡	컨테이너	2동×2단(4개동)

라. 용도 : 임시사무실

마. 소관부서 : 유통물류팀

바. 위치 : 서울청과(주) 채소임시경매장 내부(비가림시설 14동 내부)



3. 2018년도 제1차 가설건축물심의회

가. 일 시 : 2018년 10월 24일(수) 11:00~11:30

나. 장 소 : 가락물 업무동 14층 시설안전팀 회의실

다. 심의 안건

- 의안 제1호 : 채소임시경매장내 서울청과(주) 임시사무실(컨테이너) 4동 신축

라. 참 석 자

- 가설건축물심의 위원

구분	소속	성명	참석여부
위원장	건설안전본부장	김승호	참석
위 원	기획팀장	권상구	참석
위 원	재무팀장	김이종	불참
위 원	농산팀장	서경남	참석
위 원	수산팀장	김승로	참석
위 원	환경교통팀장	김인수	참석

※ 유통물류팀장은 금회 심의회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장으로 심의위원에서 제외함

- 간 사 : 시설안전팀장 정우철
- 소관부서 : 유통물류팀

마. 심의 결과

- 의안 제1호 : 원안 승인

4. 가설건축물 이전설치 승인조건

가. 특기사항

- ㉠ 건축법 제2조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선임하고 건축법 제25조에 의한 공사감리를 시행하고 완료 후 공사감리완료확인서를 제출한다.
- ㉡ 화재안전을 위해 신설되는 컨테이너(임시사무실)에 소화기 및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 시설현대화사업, 시장의 기능유지 또는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서울청과(주)'의 부담으로 즉시 철거한 후 원상복구하며, 시설물 및 공작물, 설비 등에 지출한 비용과 관련되는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으며, 대체공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 일반적 사항

- ㉠ 본 시설의 설치,관리,철거 비용은 서울청과(주)가 부담한다.
- ㉡ 가설건축물의 승인용도 이외로 사용을 금지하며,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해당 가설건축물을 서울청과(주) 비용으로 철거한다.
- ㉢ 서울청과(주)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본 시설의 설치, 사용, 철거 등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 설치공사시 통행인의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용 잔재물은 서울청과(주) 책임하에 도매시장 밖으로 반출한다.
- ㉤ 가설건축물 신축을 위한 설계도서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다.
- ㉥ 설치공사 관련 기술적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시설안전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의 건축공사와 가스공사 또는 전기공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의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 ㉧ 공사 착공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토록 할 것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설계도서
 - 공사도급계약서
 - 공사감리계약서
- ㉨ 가설건축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의 확인을 받아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송파구청에 존치기간 연장 신고한다.

5. 행정사항

가. 가설건축물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확인서 징구(유통물류팀)

나.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사장승인방침 수립(시설안전팀)

다. 착공계 제출 (서울청과(주) → 시설안전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설계도서
- 공사도급계약서
- 공사감리계약서

라. 시공관리(시설안전팀)

마. 준공계 제출 (서울청과(주) → 시설안전팀)

바. 가설건축물 승인조건 이행확인(유통물류팀)

- 붙임 : 1. 2018년도 제1차 가설건축물심의회 결과보고 1부
2. 이행확인서 1부
3. 도면 1부. 끝.